

의안번호	제 65 호
의 결 연 월 일	2014년 10월 24 일 (제335회)

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 의 자	이숙애 의원 등 7명
발의연월일	2014년 10월 16일

#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숙애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65
----------	----

발의연월일 : 2014년 10월 16일  
발 의 자 : 이숙애·최병윤·이광진  
임순목·박한범·정영수  
윤은희 의원(7인)

## 1. 제안이유

충청북도의회의 교섭단체 간 창구 일원화로 도의회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, 그 밖에 상임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 선임절차 등 교섭단체 구성에 따라 운영상 필요한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제명을 「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」에서 「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」로 함(안 제명)
- 나. 충북도의회의 교섭단체 구성 근거를 규정함(안 제2조 신설)
- 다. 상임위원 및 상임위원장 선임 또는 교체선임 시, 교섭단체 소속의원수의 비율을 감안하여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과 협의하여 본회의에서 선임 또는 교체선임 하도록 함(안 제10조)

## 3. 개정조례안 : 별첨

## 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첨

## 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별첨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규제관련사항 : 해당없음

라. 입법예고 : 충청북도의회 공고 제2014-28호

##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”를 “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충청북도의회위원회의”를 “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의”로 한다.

제6조제2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, 제2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제3조부터 제9조까지로 하고,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조(교섭단체의 구성) ① 충청북도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에 5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. 다만,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은 5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.

② 교섭단체는 대표의원과 부대표의원을 둘 수 있으며,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정당의 소속의원 명부와 대표의원 직인 및 사인 인영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제1항의 단서에 따라 교섭단체를 구성할 때에는 소속의원 명부 대신 소속의원이 연서·날인한 명부를 제출 하여야 한다.

③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소속의원의 변동이 있거나 소속정당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.

④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정당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.

제9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하며,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0조(상임위원 및 상임위원장의 선임과 교체선임) ① 상임위원 및 상임위원장은 교섭단체 소속의원수의 비율을 감안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과 협의하여 본회의에서 선임 또는 교체선임한다. 다만,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이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교섭단체 소속의원수의 비율을 감안하여 상임위원 및 상임위원장을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 또는 교체선임한다.

②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상임위원 선임은 해당 의원의 의견을 들어 의장이 이를 행한다.

③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은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의원 1명, 각 상임위원회의 부위원장 1명,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중에서 본회의 의결로 선임 또는 교체선임한다.

④ 특별위원회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 또는 교체선임한다. 다만,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은 교섭단체 소속의원수의 비율을 감안하여 상임위원회의 위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선임한다.

## 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상임위원 및 상임위원장 선임과 교체선임에 관한 적용례)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62조에 따라 <u>충청북도의회위원회의</u>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&lt;신 설&gt;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<u>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의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2조(교섭단체의 구성) ① <u>충청북도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에 5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. 다만,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은 5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<u>교섭단체는 대표의원과 부대표의원을 둘 수 있으며,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정당의 소속의원 명부와 대표의원 직인 및 사인 인영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제1항의 단서에 따라 교섭단체를 구성할 때에는 소속의원 명부 대신 소속의원이 연서·날인한 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.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제2조 ~ 제5조 (생략)</p> <p>제6조(상임위원장)① (생략)</p> <p>②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.</p> <p>③·④(생략)</p> <p>제7조·제8조 (생략)</p> <p>제9조(위원의 선임과 교체 선임)</p> <p>① 상임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.</p>	<p>③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소속의원의 변동이 있거나 소속정당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.</p> <p>④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정당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제3조 ~ 제6조 (현행 제2조부터 제5조까지와 같음)</p> <p>제7조(상임위원장)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&lt;삭제&gt;</p> <p>②·③(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)</p> <p>제8조·제9조 (현행 제7조 및 제8조와 같음)</p> <p>제10조(상임위원 및 상임위원장의 선임과 교체선임) ① 상임위원 및 상임위원장은 교섭단체 소속</p>

현행	개정안
<p>② 특별위원회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.</p> <p>③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임기 중 교체 선임할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에 따른다.</p>	<p>의원수의 비율을 감안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과 협의하여 본회의에서 선임 또는 교체선임한다. 다만,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이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교섭단체 소속의원수의 비율을 감안하여 상임위원 및 상임위원장을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 또는 교체선임한다.</p> <p>②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상임위원 선임은 해당 의원의 의견을 들어 의장이 이를 행한다.</p> <p>③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은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의원 1명, 각 상임위원회의 부위원장 1명,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중에서 본회의 의결로 선임 또는 교체선임한다.</p> <p>④ 특별위원회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 또는 교체선임한다. 다만,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</p>

현행	개정안
<p><u>제10조</u> ~ <u>제13조</u> (생략)</p>	<p><u>원은 교섭단체 소속의원수의 비율을 감안하여 상임위원회의 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선임한다.</u></p> <p><u>제11조</u> ~ <u>제14조</u> (현행 <u>제10조</u> 부터 <u>제13조</u>까지와 같음)</p>

## 관계법령 발췌

### □ 지방자치법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제43조(의회규칙) 지방의회는 내부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제56조(위원회의 설치)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·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·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.

제62조(위원회에 관한 조례)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